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3078번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25년 8월 11일
- 회부일 : 2025년 8월 14일

나.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3079번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25년 8월 11일
- 회부일 : 2025년 8월 14일

다.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3080번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25년 8월 11일
- 회부일 : 2025년 8월 14일

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3081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5년 8월 11일
-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가.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망우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시립은평청소년성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은평청소년성장기쉼터(여)의 위탁기간이 2025. 12.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62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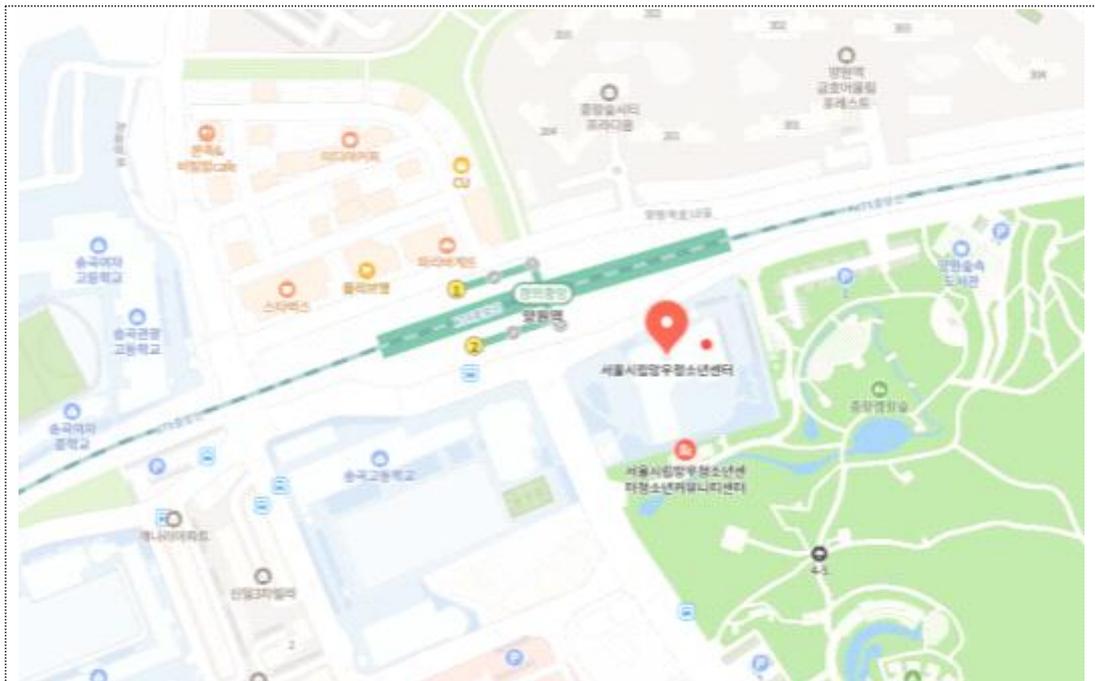
- 시립망우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직업 탐색 등 청소년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송림길 156
- 개관일자 : 2006. 4. 4.
- 시설규모 : 대지 7,710 m^2 / 연면적 5,150 m^2
- 주요시설 : 미디어 스튜디오, 메이커 스페이스, 힐링테라스, 소극장, 수영장, 체육관, 캠핑장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3년(2026.1.1. ~ 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954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448백만원, 운영비 698백만원, 사업비 2,332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476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나.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청소년 특화시설로,
- 세계시민교육 및 청소년 해외교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며, 해외 문화·언어에 대한 지식 및 네트워크 등 자원이 필요함.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문화교류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 세계 시민 육성 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다문화교육 및 국제이해 교육 활동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연구 및 교류협력 사업
- “센터”의 시설보수 및 안전 등 물적 설비 관리
-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청소년을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2층
- 개관일자 : 2000. 5. 27.
- 시설규모 : 914.6m²
- 주요시설 : 강당, 세미나실, 북카페,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3년(2026.1.1 ~ 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471백만원('25년도)
 - 산출근거
 - 인건비 630백만원, 운영비 104백만원,
사업비 705백만원, 사업외지출및기타 3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다.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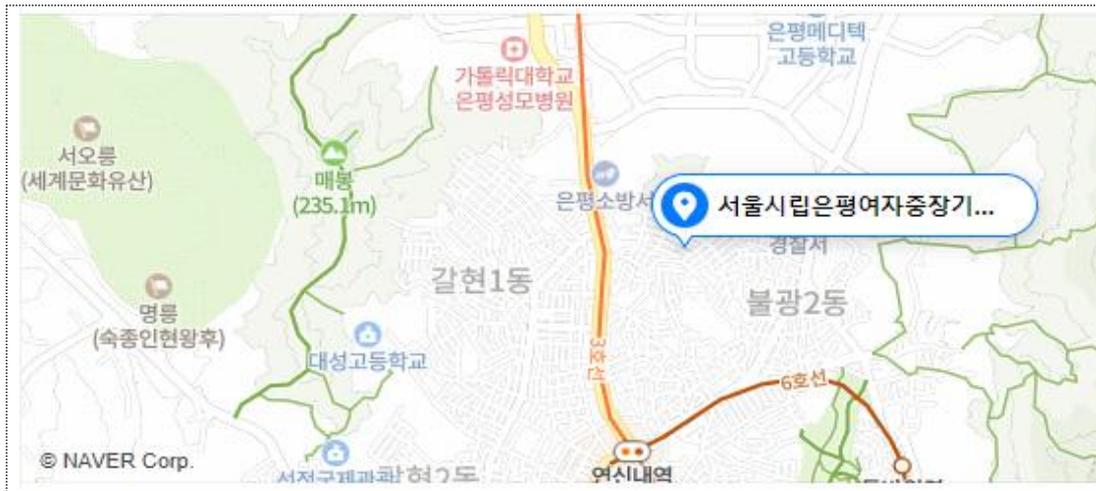
-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는 가정 밖(여성) 청소년 보호 및 가정과 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청소년 상담 및 교육문화사업
- 청소년 문제예방사업,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 쉼터의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2길 37-6 동산홈타운
- 시설규모 : (대지) 143.99㎡, (연면적) 214.64㎡
- 주요시설 : 숙소, 상담실, 사무실 등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 3년(2026.01.01. ~ 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21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307백만원, 운영비 33백만원, 사업비 18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 추진 필요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및 강사양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위탁 사무 내용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보호자,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교육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인권컨설팅 사업
 -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민간위탁기간 : 3년(2026.1.1.~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78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23백만원, 운영비 4백만원, 사업비 5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2)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3) 시립은평청소년증장기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4)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금번 제출된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4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음.

〈 제332회 임시회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의안번호	시설명	구분	위탁동의안 개요
3078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56 - 개관일자 : 2006.4.4. - 시설규모 : 부지 7,710㎡, 건물 5,150㎡ - 민간위탁기간 : 2026.1.1.~2028.12.31.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4,954백만원('25년)
3079	시립청소년 문화교류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2층 - 개관일자 : 2000. 5. 27. - 시설규모 : 부지 17,193㎡, 건물 914.6㎡ - 민간위탁기간 : 2026.1.1.~2028.12.31.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1,471백만원('25년)
3080	시립은평청소년 중장기쉼터(여)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2길 37-6 동신현대문 - 개관일자 : 2017.12.12.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43.99㎡, 연면적 214.64㎡ - 민간위탁기간 : 2026.1.1.~2028.12.31.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520백만원('25년)
308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위탁 : 2014. 6. 27. - 민간위탁기간 : 2026.1.1.~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178백만원('25년)

※ 재위탁 및 재계약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재위탁: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법률(「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위로 한정되고, 본 동의안들의 위탁사무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 관리, 교육 등으로,
 - 평생교육국은 민간의 경험(노하우 등) 등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활동·교류·문화·교육·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청소년시설 운영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금번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4건 모두 2025년 12월 31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상황인바, 민간위탁을 추진할 필요성과 성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설형'과 '사무형' 구분

- 시설형 위탁 : 행정재산(서울시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와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사무형 위탁 :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민간위탁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위탁을 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동의안별 검토

1)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망우 청소년센터(이하 ‘망우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6.1.~2028.12.) 본 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송림길 156
- 시설규모 : 대지 7,710m² / 연면적 5,150m²
- 개관일자 : 2006. 4. 4.
- 주요시설 : 미디어 스튜디오, 메이커 스페이스, 힐링테라스, 소극장, 수영장, 체육관, 캠핑장 등
- 위탁기간 : 3년(2026.1.1. ~ 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954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448백만원, 운영비 698백만원, 사업비 2,332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476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평생교육국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망우청소년센터는 2006년 개관하여, 2016년부터 10년간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하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의 시설로, 현원 52명(정규직 20명, 계약직 32명, 2025.6.30. 기준)의 직원이 49억 5천 4백만원(2025년)의 예산으로 9개 분야, 37개 사업, 1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망우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3년 ('06.1.1.~'08.12.31.)	(사)삼동청소년회	공개모집
2차 위탁	2년 ('09.1.1.~'10.12.31.)	(사)삼동청소년회	재계약
3차 위탁	3년 ('11.1.1.~'13.12.31.)	(사)삼동청소년회	공개모집
4차 위탁	2년 ('14.1.1.~'15.12.31.)	(사)삼동청소년회	재계약
5차 위탁	3년 ('16.1.1.~'18.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공개모집
6차 위탁	2년 ('19.1.1.~'20.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재계약
7차 위탁	3년 ('21.1.1.~'23.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공개모집
8차 위탁	2년 ('24.1.1.~'25.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재계약

〈 망우청소년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2025.6.30. 기준)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축탁직)
정원	28	28	1	-	2	2	4	7	8	2	2	-	-	-
현원	52	20	1	-	1	2	5	8	2	1	-	32	32	-

〈 망우청소년센터의 사업구성 〉

연번	분야	주요 사업 내용	계획
	총계	9개 분야, 37개 사업, 136개 프로그램	
1	상담지도사업	꿈터심리상담, 지역연계사업, 특성화사업 등	3개 사업, 7개 프로그램
2	교육문화사업	자기계발프로그램(힐링여가) 등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3	생활체육사업	수영교실 휘트니스 주말체육교실 청소년체육자원 등	8개 사업, 17개 프로그램
4	목적사업	네트워크사업 청소년조직활동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등	8개 사업, 36개 프로그램
5	민간위탁사업	방과후카데미 서울유스데이 찾아가는센터 모의유엔대회 등	10개 사업, 70개 프로그램
6	보조금사업	대안학교 청소년전용시간요일제 등	3개 사업, 5개 프로그램
7	자본형성사업	부대수입청소년시설 신축, 시설보강(민간대행사업비) 등	2개 사업
8	시설이용료	시설사용료, 주차요금수입, 입장료수입 등	1개 사업
9	기타사업	부대수입(식당, 개인사무함운영, 커뮤니티 공과금) 등	1개 사업

〈 2025년 망우청소년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수정)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 예산	계	4,954,383	100%	4,998,190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1,690,226	34.1%	1,642,483	32.9%
		민간위탁사업비	150,873	3.0%	150,000	3.0%
	보조금	국비보조금	202,040	4.1%	267,000	5.3%
		시비보조금	39,030	0.8%	0	0%
		구비보조금	65,200	1.3%	67,000	1.3%
	사업수입	시설이용료수입	2,428,332	49.%	2,520,366	50.4%
	사업외 수입	법인전입금	1,000	0.1%	1,000	0.1%
		이월금	92,436	1.8%	90,000	1.8%
		예수금수입	282,225	5.6%	257,320	5.1%
		이자수입	801	0.1%	801	0.1%
		기타수입	2,220	0.1%	2,220	0.1%
	세출 예산	계	4,954,383	100%	4,998,190	100%
		인건비	1,448,273	29.2%	1,585,535	31.7%
		운영비	697,771	14.1%	582,832	11.7%
사업비		2,332,153	47.1%	2,397,834	48.0%	
사업외지출		282,225	5.7%	257,320	5.1%	
예비비		50,528	1.0%	52,069	1.0%	
지난년도지출		62,705	1.2%	80,000	1.6%	
반환금		27,448	0.5%	1,500	0.1%	
일반관리비		1,100	0.1%	1,100	0.1%	
이윤		-	0%	0	0%	
부가가치세		52,180	1.1%	40,000	0.8%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2023년도의 성과를 2024년 8월에 평가한 내용으로, 이를 기반으로 2025년 하반기의 망우청소년센터를 판단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의회가 본 동의안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은 적시성을 확보한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망우청소년센터 운영평가(2023년) 〉

□ 운영평가 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주)가치경영원]
- 평가기간 : 2023년도(실시기간 2024.3.~8.)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93.44점(100점 만점)

- 2024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3.1.~12. 성과) 결과 연차사용 촉진, 교육훈련 실적 감소, 안전역량 강화 및 의식 제고, 양적·질적 성과 측정 방안 모색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음.

〈 2024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중 개선요청 사항 〉

-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연차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1인당 평균 2.9일의 연차수당이 발생되고 있어, 연차사용 촉진을 강화하고 연차저축제(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도입을 권고함
- 교육훈련을 위한 개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전체 교육예산이 8,260천원으로 전년도 1,600천원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교육(전년도 91시간 → 당해연도 78시간), 직무교육(전년도 804.3시간 → 당해연도 643.5시간)의 1인당 교육훈련 실적 감소가 발생함
- 평가년도 안전사고 발생 건수 4건으로, 시민의 이용률이 높은 기관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고객 대상 안전역량 강화 및 의식 제고 활동 확대를 제안함
- 재난안전조직상 운영부장의 역할과 책임부여가 모호하여 명확화가 요구됨
- 언론홍보나 대외 수상실적 외에 대외적 우수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하므로 양적,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제안함

- 운영평가 결과에서 망우청소년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고객 대상 안전역량 강화 및 의식 제고 활동 확대, 재난 안전 조직상 운영부장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부여를 제안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 운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망우청소년센터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시설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평생교육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망우청소년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는 회계, 시설 점검 및 관리,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 시설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10년간 본 시설을 운영한 수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망우청소년센터의 지도·점검 결과 >

연 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개인정보 관리 미흡(보안 설정 누락)	조치 완료
	민간위탁계좌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세 미처리	조치 완료
	사업소분 주민세를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권고사항)	조치 완료
	사업수입 매년 정산 권고(권고사항)	조치 완료
2023년	화장실 일상점검표 및 불법촬영장비 점검표 관리 소홀	조치 완료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미반환	조치 완료
	현금 시재액의 수입 인식 시기 오류	조치 완료
2024년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 미수립	조치 완료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증빙 서류 미흡(2건)	조치 완료

- 한편, 망우청소년센터는 2025년 기준 생활체육사업(수영교실, 휘트니스, 주말체육교실, 청소년체육지원 등), 목적사업(네트워크사업, 청소년조직활동,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등), 민간위탁사업(방과후아카데미, 서울유스데이, 찾아가는센터, 모의유엔대회 등) 등 9개 분야, 37개 사업, 136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2024년 청소년이용률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상 최소 이용률인 6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다만, 2023년 청소년이용률(63.8%)과 비교할 때, 2024년 청소년이용률(86.7%)이 크게 상승(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및 프로그램별 비교(효과성 비교 등)를 통해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망우청소년센터의 사업 실적 〉

(단위 : 명)

연도	계획	실적	달성률	청소년실적	청소년이용률
2023	518,727	486,511	93.8%	310,274	63.8%
2024	399,334	322,723	80.8%	279,665	86.7%

※ 여성가족부,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57p

다. 이용자 관리

- 업무내용
- 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이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 자립형 시설인 망우청소년센터의 정원이 28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은 20명(현원)만을 운영하고 있고, 비정규직인 계약직은 32명으로, 계약직의 비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 평생교육국이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을 정원으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수탁기관이 운영비 절감 또는 마련을 위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평생교육국의 현황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센터 중 자립형시설과 지원형 시설

- 구분 기준 : 수익시설(수영장 등)의 존재 유무
- 자립형시설 (14개소) : 문래, 목동, 수서, 노원, 강북, 구로, 성북, 마포, 은평, 성동, 금천, 망우, 동대문, 서대문,
- 지원형시설 (7개소) : 서울, 강동, 중랑, 창동, 광진, 화곡, 보라매

- 평생교육국이 청소년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낮을 경우,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저하, 부적정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관리·감독하지 못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만족도와 이용률이 감소할 수 있는바,
- 적정수준의 지도·감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 분야에 최소한의 이해 또는 소양 등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되며, 청소년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추진 방식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재)대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이하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6.1.~2028.12.) 본 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 세계 시민 육성 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다문화교육 및 국제이해 교육 활동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연구 및 교류협력 사업
 - "센터"의 시설보수 및 안전 등 물적 설비 관리
 -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청소년을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2층
- 시설규모 : 914.6㎡
- 개관일자 : 2000. 5. 27.
- 주요시설 : 강당, 세미나실, 북카페, 사무실 등
- 위탁기간 : 3년(2026.1.1. ~ 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471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630백만원, 운영비 104백만원, 사업비 705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3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평생교육국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 문화교류, 다문화교육, 국제교류정책 등의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2000년 개관하여, 2012년부터 13년간 재단법인 대산문화재단(이하 '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면적 914.6㎡(서울 유스호스텔 2층) 시설로, 현원 11명(정규직 10명, 계약직 1명, 2025.6.30. 기준)의 직원이 14억 7천 1백만원(2025년)의 예산으로 3개 분야, 2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2년 8개월('00.5.1.~'02.12.3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공개모집
2차 위탁	2년 ('03.1.1.~'05.12.3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공개모집
3차 위탁	3년 ('06.1.1.~'08.12.3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공개모집
4차 위탁	3년 3개월('09.1.1.~'12.3.3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공개모집
5차 위탁	3년('12.4.1.~'15.3.31.)	(재)대산문화재단	공개모집
6차 위탁	2년('15.4.1.~'17.3.31.)	(재)대산문화재단	재계약
7차 위탁	3년('17.4.1.~'20.3.31.)	(재)대산문화재단	공개모집
8차 위탁	2년('20.4.1.~'22.3.31.)	(재)대산문화재단	재계약
9차 위탁	2년 9개월('22.4.1.~'24.12.31.)	(재)대산문화재단	공개모집
10차 위탁	1년('25.1.1.~'25.12.31.)	(재)대산문화재단	재계약*

※ 제10차 위탁(재계약) 위탁기간(1년) 사유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4.7.18.)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의견)
 - 재계약 기간 조정 필요 (**2년 → 1년**)
 - 기존 서울유스호스텔 및 청소년 특화시설 등과의 유사·중복 기능 정비방안 마련 필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안건 후속조치 이행심의 결과('24.8.2.) : 적정 (조건 이행)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24.10.30.) : 적격 (재계약 기간 1년 조정)

〈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2025.6.30. 기준)

구분	총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촉탁직)
정원	11	11	1	1	1	2	2	4	-	-	-	-	-	-
현원	11	10	1	-	-	2	1	6	-	-	-	1	1	-

〈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사업구성 〉

	분야	주요 사업 내용	계획
	총계	3개 분야, 21개 사업	
1	국내사업	뿌리깊은 세계유산, 청소년 모의유엔 대회, 미지갤러리 운영사업, 미지 스튜디오,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	9개 사업
2	국외사업	미지 희망원정단, 동아시아 청소년교류사업, 미지 청소년 글로벌 봉사단, 청소년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등	7개 사업
3	보급사업	희망UP, 세계유산 여행교실, 청소년 국제교류 실무자 워크숍,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 2025년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 예산	계	1,470,582	100%	1,567,655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892,394	61%	901,425	58%
		민간위탁사업비	-	-	-	-
	보조금	국비보조금	-	-	-	-
		시비보조금	353,700	24%	453,700	29%
		구비보조금	-	-	-	-
	사업수입	교육문화사업수입	109,510	7%	109,510	7%
		사업외 수입	법인전입금	84,000	6%	84,000
	이월금		11,958	1%	-	-
	기타잡수입		19,020	1%	19,020	1%
세출 예산	계	1,470,582	100%	1,567,655	100%	
	인건비	630,327	43%	682,874	44%	
	운영비	104,187	7%	104,248	7%	
	사업비	705,090	48%	761,513	49%	
	사업외지출	18,500	1%	18,500	1%	
	예비비	520	0%	520	0%	
	지난년도지출	-	-	-	-	
	반환금	11,958	1%	-	-	
	일반관리비	-	-	-	-	
	이윤	-	-	-	-	
	부가가치세	-	-	-	-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2023년도의 성과를 2024년 8월에 평가한 내용으로, 이를 기반으로 2025년 하반기의 청소년문화교류센터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의회가 본 동의안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은 적시성을 확보한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운영평가(2023년) 〉

□ 운영평가 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주)가치경영원]
- 평가기간 : 2023년도(실시기간 2024.3.~8.)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88.98점(100점 만점)

- 2024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3.1.~12. 성과) 결과 업무매뉴얼 수립, 연차제도 비효율 개선, 외부위원 참여율 제고, 분기별 효율적 예산집행 계획 마련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음.

〈 2024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중 개선요청사항 〉

-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 구비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관련 실적에 대한 명시가 요구됨. 만일 매뉴얼 구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업무매뉴얼 수립을 통한 사업 연속성 제고 방안 마련이 바람직할 것임
- 기관의 평균 연차사용률은 77%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연차축진 제도 또한 운영하여 비효율을 초래함. 이에 연차수당 지급 대신 연차축진 및 연차저축제도 활용에 대한 방향성 모색에 대한 검토를 제안함
- 운영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율(1차 회의 53.33%, 2차 회의 46.67%)과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율(33.33%)이 낮으므로, 외부위원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 평가년도 전체예산 집행률은 78.36%로 저조하며, 분기별 집행률의 경우 1분기 68.69%, 2분기 80.62%, 3분기 117.61%, 4분기 67.25%로 상·하반기의 집행률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한 분기별 예산계획의 적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분기별 효율적 예산집행 마련을 통해 연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운영평가 결과에서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매뉴얼 수립, 운영위원회 등의 외부위원 참여율 제고, 분기별 효율적인 예산집행 계획 마련 등을 지적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 운영에서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무 관리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은 다른 청소년시설에서도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지, 내부 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의 참여율은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2023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2.1.~12. 성과) 평가결과(95.19점)와 비교할 때, 2024년 평가결과(88.98점)가 크게 하락(6.2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2025년 운영평가 결과에서 개선이 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는 회계, 시민만족도 조사 미흡 등 시설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13년 이상 본 시설을 운영한 수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지도·점검 결과 >

연 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민간위탁계좌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세 미처리	조치 완료
2023년	시민만족도 조사 미흡 (응답자 수 저조)	조치 완료
2024년	추가경정예산 수립 절차의 미흡	조치 완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 미흡	조치 완료

- 한편, 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2025년 기준 국내사업(뿌리깊은 세계유산, 청소년 모의유엔 대회, 미지갤러리 운영사업 등), 국외사업(미지 희망원정단, 동아시아 청소년교류사업, 미지 청소년 글로벌 봉사단 등), 보급사업(희망UP, 세계유산 여행교실,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이용률('23년 90.7%, '24년 89.6%, '25년 90.7%)은 90%를 넘고 있어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상 최소 이용률인 6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사업별 실적 〉

(단위 : 명)

연 도	사 업	계획인원	달성인원	청소년인원	청소년비율
2023년	국내사업	123,851	77,349	68,053	88.0%
	국외사업	2,007	2,821	2,734	96.9%
	보급사업	8,066	11,799	11,499	97.5%
	시설사용	-	28,055	26,600	94.8%
	합 계	133,924	120,024	108,886	90.7%
2024년	국내사업	113,176	83,112	73,525	88.5%
	국외사업	2,970	3,972	3,780	95.2%
	보급사업	6,566	12,431	11,857	95.4%
	시설사용	-	5,486	4,929	89.8%
	합 계	122,712	105,001	94,091	89.6%
2025년 6월	국내사업	72,626	17,493	15,941	91.1%
	국외사업	2,306	609	293	48.1%
	보급사업	5,410	3333	3,078	92.3%
	시설사용	-	1,471	1,471	100%
	합 계	80,342	22,906	20,783	90.7%

- 유튜브 조회수 : '23년 136,141명, '24년 86,476명, '25년 6월 35,568명

※ 여성가족부,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57p

다. 이용자 관리 <input type="checkbox"/> 업무내용 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의 <u>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이상으로 유지</u>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 다만, 2025년 6월 기준 국외사업의 청소년비율(48.1%)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외사업이 대체로 청소년들의 여름방학(7월~8월) 이후에 집중된 결과로 보여짐.
- 특정시기에 편중된 사업추진은 직원들의 업무 과중, 분기별 예산집행률의 편차 발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업추진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특히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024년 제6차, '24.7.18.) 심의결과(조건부 적정), 서울유스호스텔 및 기운영 중인 청소년 특화시설 등과 통폐합 등 유사·중복기능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바,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재계약 위탁기간(1년) 사유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4.7.18.)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의견)

<2024년 제5,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現수탁법인	위탁예정기간	심의결과	의견
(재)대산 문화재단	2년 (25.01.01.~'26.12.31.)	조건부 적정	[조건] - 재계약 기간 1년으로 조정 - 서울유스호스텔 및 기운영 중인 청소년 특화시설 등과 통폐합 등 유사·중복기능 정비 방안 마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안건 후속조치 이행심의 결과('24.8.2.) : 적정 (조건 이행)

<p><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추진 보완계획> (청소년정책과-13881호, 2024.7.26.)</p> <p>2. 보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계약 기간 조정 : 2년 → 1년 [재계약 협약 시 위·수탁기간 1년('25.1.1~'25.12.31.)으로 조정] ○ 유사·중복기능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교류센터는 서울유스호스텔, 특화시설(미래진로센터)과 운영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이 상이하나, 일부 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하므로 - 향후 문화교류센터 사업계획 시 타 시설과 기능중복이 없도록 면밀히 프로그램 편성·추진 - 청소년시설 재구조화 TF 운영을 통한 기능 통·폐합 등 종합적 개선방안 수립('24.9월 중)
--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24.10.30.) : 적격 (재계약 기간 1년 조정)

3)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이하 '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6.1.~2028.12.) 본 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운영
- **위탁사무**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 청소년 상담 및 교육문화사업
 - 청소년 문제예방사업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 쉼터의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2길 37-6 동산홈타운
- **시설규모** : (대지) 143.99㎡, (연면적) 214.64㎡
- **개관일자** : 2017. 12. 12.
- **주요시설** : 숙소, 상담실, 사무실 등
- **위탁기간** : 3년(2026.1.1. ~ 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521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307백만원, 운영비 33백만원, 사업비 18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일반적으로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청소년범죄 및 범죄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을 통한 정서적 지지, 문화활동,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쉼터 중 일시쉼터는 고정형과 이동형(차량)으로 나눌 수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일시보호를 통해 가정복귀가 주요 업무이며, 단기 및 중·장기(자립지원관 포함) 쉼터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생활·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청소년쉼터의 종류 〉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증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최장 24개월)	3년 이내 증장기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 (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학업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 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 등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가정 밖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활동 ·약·주·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일시·증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및 주요도심)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여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가정복귀 및 자립지원 등의 교육·상담 등의 활동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은평청소년증장기쉼터는 2017년 개관하여, 개관 이래 8년간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이하 '행복창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정원 10명의 지상 4층 (연면적 214.64㎡) 시설로, 현원 7명(정규직 5명, 계약직 2명, 2025.6.30. 기준)의 직원이 5억 2천 1백만원(2025년)의 예산으로 1개 분야, 5개 사업,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은평청소년증장기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3년 ('17.9.1.~'20.6.30.)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공개모집
2차 위탁	2년 ('20.7.1.~'22.6.30.)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재계약
3차 위탁	3년 ('22.7.1.~'25.6.30.)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공개모집
4차 위탁	6개월 ('25.7.1.~'25.12.31.)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재계약*

※ 제4차 위탁(재계약) 위탁기간(6개월) 사유

- 수탁법인 관련 내부고발 및 민원사항으로 인해 수탁법인의 재계약기간 변경 요청 ('25.5.19.)
 - 재계약 최소화 요청 (6개월)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5.29.) : 적격 (재계약 기간 6개월 조정)

〈 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의 시설 현황 〉

시설명	용 도
옥상	야외공간
4층	생활실5(자립지원실), 컴퓨터실 및 북카페, 야외테라스(카페테리아), 화장실1
3층	생활실1, 생활실2, 생활실3, 생활실4, 야간숙직실, 화장실1, 화장실2, 세탁실1, 세탁실2
2층	소장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및 회의실, 식당, 화장실1, 화장실2
1층	현관, 사무실

〈 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2025.6.30. 기준)

구분	총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축탁직)
정원	7	5	-	-	1	-	1	3	-	-	-	2	2	-
현원	7	5	-	-	1	-	1	3	-	-	-	2	2	-

〈 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의 사업구성 〉

분야	구분	주요 사업 내용	계획
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총계	1개 분야, 5개 사업, 24개 프로그램	
	1. 목적사업	야간보호·숙식제공, 의료지원, 기초생활서비스, 자립준비하기 등	14개 프로그램
	2. 교육문화사업	학습지원서비스(학용품, 교재비 지원 등)	1개 프로그램
	3. 상담사업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상담사례회의, 멘토링 등	5개 프로그램
	4. 자립사업	자립인사이드(자격등, 자격취득, 취업컨설팅 등 지원)	1개 프로그램
	5. 기타사업	대외홍보, 슈퍼비전(실무자 역량 강화), 뿌봉(뿌듯한봉사활동)	3개 프로그램

〈 2025년 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1)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 예산	계	504,971	100%	549,000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484,971	96.0%	528,000	96.2%
		민간위탁사업비	-	-	-	-
	보조금	국비보조금	-	-	-	-
		시비보조금	-	-	-	-
		구비보조금	-	-	-	-
	사업수입	교육문화사업수입	15,000	3.0%	15,000	2.7%
	사업외 수입	법인전입금	5,000	1.0%	6,000	1.1%
		이월금	-	-	-	-
		기타잡수입	-	-	-	-
세출 예산	계	504,971	100%	549,000	100%	
	인건비	290,836	57.6%	306,820	55.9%	
	운영비	31,707	6.3%	35,678	6.5%	
	사업비	182,428	36.1%	206,502	37.6%	
	사업외지출	-	-	-	-	
	예비비	-	-	-	-	
	지난년도지출	-	-	-	-	
	반환금	-	-	-	-	
	일반관리비	-	-	-	-	
	이윤	-	-	-	-	
	부가가치세	-	-	-	-	

출처 : 평생교육국(2025년 6월), 민간위탁(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발취

1) 기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과 총 세입세출예산 차이(16백만원) 발생함.

구분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총액	521백만원	505백만원
산출근거	인건비(307백만원), 운영비(33백만원), 사업비(181백만원)	인건비(291백만원), 운영비(32백만원), 사업비(182백만원)
확인결과	심의의뢰서 세입세출예산이 맞는 것으로 확인 (민간위탁 동의안 총액 및 산출근거 잘못 기재)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2023년도의 성과를 2024년 8월에 평가한 내용으로, 이를 기반으로 2025년 하반기의 은평청소년중장기쉽터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의회가 본 동의안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은 적시성을 확보한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은평청소년중장기쉽터 운영평가(2023년) 〉

□ 운영평가 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주)가치경영원]
- 평가기간 : 2023년도(2024년 8월 실시)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81.63점(100점 만점)

- 2024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3.1.~12. 성과) 결과 정량화된 목표 수립, 청소년을 포함한 고객유형별 의견수렴 및 시설운영체계 고도화, 직원 장기근속 유도, 근로자 권리 보호, 만족도 제고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음.

〈 2024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중 개선요청사항 〉

-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정량화된 경영목표 수립이 가능한 사업지표에 대해서는 달성가능한 정량화된 목표 수립이 권장되며, 이는 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조직의 동기 부여가 될 것임
- 사업을 추진하는 주 대상은 '청소년'이므로 청소년을 포함한 고객을 분류하고, 고객유형별 의견 수렴 및 고객 중심의 시설 운영 체계(계획수립/의견수렴/대응방안 등) 고도화 방안 마련이 권장됨
- 24시간 근무라는 어려운 근무 환경임을 감안, 이직 방지를 위해(23년 2명 발생) 직원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장기근속 유도가 권장됨
- 규정 내 가족돌봄휴가 10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의 차별금지(승진, 승급 반영) 규정이 미반영되고 있어,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요구됨
-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23.88%가 하락하고 있어(2022년 98점→2023년 74.6점) 불만족 사항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만족도 제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운영평가 결과에서 은평청소년증장기쉼터의 정량화된 목표 수립, 청소년을 포함한 고객유형별 의견수렴 및 시설운영체계 고도화, 직원 장기근속 유도, 근로자 권리 보호, 만족도 제고 등 등을 지적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 특성에 맞는 목표 수립 및 운영체계 마련,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은평청소년증장기쉼터의 최근 지도·점검 결과는 회계,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의무 미이행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부당업무 지시, 특정단체의 자원봉사 참여 배제 등의 시설 운영에 있어 심각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바, 8년 이상 본 시설을 운영한 위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음.
 - 특히 위탁법인의 사정(내부고발 및 민원사항)으로 재계약 기간(6개월)이 조정되어, 새롭게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필히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은평청소년증장기쉼터의 지도·점검 결과 >

연 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사업비 편성·지출 부적정 (의료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을 교통카드 충전에 사용)	조치 완료
2023년	당해연도 원천징수 마감준수 미흡	조치 완료
202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의무 미이행	조치 완료
	업무추진비 연간계획 수립 미반영	조치 완료
	추가경정예산 관리 미흡	조치 완료
2025년 (특별지도점검 '25.3.31.)	시설직원의 법인 소식지 편집 업무 참여(2018년)	조치 완료
	특정 봉사단체와의 협력 거부	조치 완료

- 한편, 은평청소년증장기쉼터의 명칭은 여성가족부의 공문(여가부 청소년자립 지원과-2025호, 2023.6.7.)에 따라 변경(서울시립은평여자증장기청소년쉼터)했으나, 이를 조례(「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명칭과 상이한 명칭[조례상 별표1 명칭, 시립은평청소년증장기쉼터(여)]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변경된 명칭을 조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혼란의 여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시 청소년시설의 정원을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2에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평청소년 증장기쉼터의 정원 범위’가 시행규칙에 누락 되어 있는바, 조속한 개정과 함께 이를 시행규칙에서 누락한 평생교육국의 관리 미흡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4)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사)국제아동인권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이하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6.1.~2028.12.) 본 사무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본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에 따른 **시장의 소관사무**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형 위탁²⁾)**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 ①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이 추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어린이·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에 대한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 연수, 학습 등에는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구 분		시설형 및 자립형 민간위탁	사무형 민간위탁
위탁기간		3년 이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 다른 법령·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재계약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재계약 제한	개정 전	재계약 1회에 한해 가능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을 초과하여 장기 수탁할 수 없으며,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재위탁 시점부터 기간을 새로이 산정)
	현재	모든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1회(3년 이내)로 제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신설(2023.10.4., 2024.4.5. 시행)	

출처 : 2024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5p

2) 사무형 위탁 :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서울시의 사무를 법인, 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출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
 - 위탁사무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보호자,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교육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인권컨설팅 사업
 -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최초위탁 : 2014. 6. 27.
 - 위탁기간 : 3년(2026.1.1. ~ 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78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23백만원, 운영비 4백만원, 사업비 5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 평생교육국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증진 및 인권보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은 2014년 최초 위탁하여, 지금까지 11년간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이하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억 7천 8백만원 (2025년)의 예산으로 1개 분야, 3개 사업,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사)국제아동인권센터 현황 〉

- 명 칭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901호 (내수동, 대우빌딩)
- 설립목적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내·외 인식확대를 도모하고 아동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아동인권의 이행을 촉진
- 주요사업 : 아동인권교육, 아동인권 전문강사 양성, 아동인권교육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아동 참여증진 사업, 아동인권증진 캠페인, 아동권리포럼, 아동인권 네트워크,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 연구 자문/컨설팅 활동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의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1년 6개월 ('14. 6. 27.~'15. 12. 31.)	(사)국제아동인권센터	공개모집
2차 위탁	1년 ('16.1.1.~'16.12.31.)	(사)국제아동인권센터	재계약
3차 위탁	3년 ('17.1.1.~'19.12.31.)	(사)국제아동인권센터	공개모집
4차 위탁	2년 ('20.1.1.~'21.12.31.)	(사)국제아동인권센터	재계약
5차 위탁	2년 ('22.1.1.~'23.12.31.)	(사)국제아동인권센터	재계약
6차 위탁	2년 ('23.1.1.~'25.12.31.)	(사)국제아동인권센터	재계약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의 사업구성 〉

연번	항 목	사업내용	목표	
	3개 사업	6개 프로그램		
1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어린이·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160회, 3,275명
		역량강화과정	시설종사자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역량강화과정 운영	5회, 15명
		강사진 관리	간담회, 슈퍼비전	2회, 28명
		교육 홍보	교육 홍보 실시	수시, 불특정다수
2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 분석	32회, 3,275명	
3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환경 조성 시설(청소년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컨설팅 실시	12개소	

〈 2025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3)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 예산	계	183,504	100%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178,370	97.2%	183,719	-
		민간위탁사업비	-	-	-	-
	보조금	국비보조금	-	-	-	-
		시비보조금	-	-	-	-
		구비보조금	-	-	-	-
	사업수입	교육문화사업수입	-	-	-	-
	사업외 수입	법인전입금	-	-	-	-
		이월금	5,099	2.8%	-	-
		기타잡수입	35	0%	-	-
세출 예산	계	183,504	100%		100%	
	인건비	122,668	66.8%	126,347	68.8%	
	운영비	4,683	2.6%	4,823	2.6%	
	사업비	51,019	27.8%	52,549	28.6%	
	사업외지출	-	-	-	-	
	예비비	-	-	-	-	
	지난년도지출	-	-	-	-	
	반환금	5,134	2.8%	-	-	
	일반관리비	-	-	-	-	
	이윤	-	-	-	-	
	부가가치세	-	-	-	-	

출처 : 평생교육국(2025.6.25.), 민간위탁(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 운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발취

3) 기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과 총 세입세출예산 차이(6백만원) 발생함.

구분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총액	178백만원	184백만원
산출근거	인건비(123백만원), 운영비(4백만원), 사업비(51백만원)	인건비(123백만원), 운영비(5백만원), 사업비(51백만원)
확인결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세입세출 총액(184백만원)이 아닌 민간위탁금(178백만원)을 총액으로 기재함.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청소년정책과 자체평가)에 따르면, 2024년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개최 실적(교육횟수, 교육인원)은 목표를 상회하고 있으나, 성과분야 평가결과를 점수화하여 반영하고 있지 않음.

- 해당 센터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대상(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청소년정책과 지도점검 이외에 외부 전문기관의 성과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바, 본 동의안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자료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5억원 미만의 사무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4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조직담당관-1700호, 2024.2.14.)'에 따라 2024년 종합성과평가부터 모든 민간위탁 사무가 평가대상으로 확대됨.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의 성과지표 대비 실적 >

구 분	교육횟수(회)		교육인원(명)		인권교육 강사양성	모니터링	컨설팅
	목표	실적	목표	실적			
2024년	174	185 (106.3%)	3,425	3,494 (101.0%)	8명/ 8명 수료	총 35회	우리동네키움센터 10개소, 청소년센터 1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2025년 6월말 기준	160	108 (67.5%)	3,275	2,480 (75.7%)	20명/ 20명 수료	총 19회	우리동네키움센터 6개소, 청소년센터 1개소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과 관련한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는 회계, 채용, 복무관리, 재물조사 누락 등 사무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11년 이상 본 사무를 운영한 위탁기관의 '청소년 사무위탁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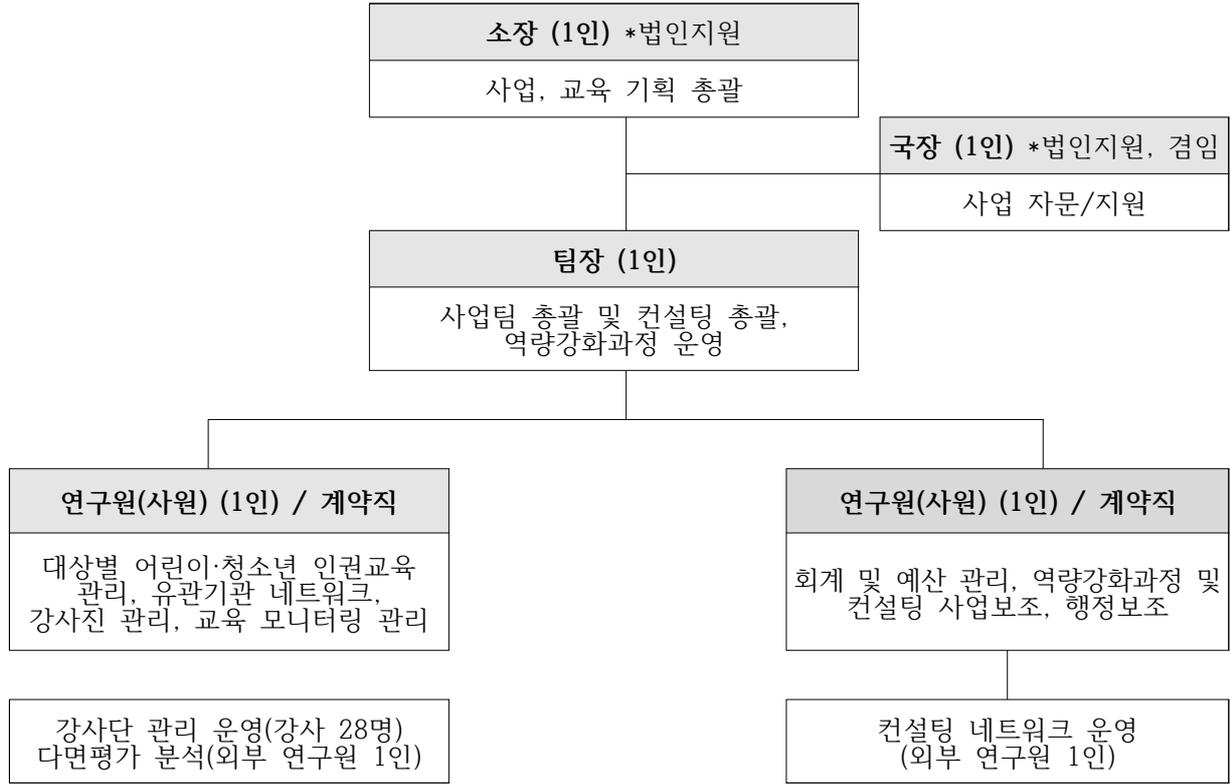
-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청소년 사무위탁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의 지도·점검 결과 〉

연 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1년 미만 근무 직원에 대한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조치 완료
	직원 채용 공고 일수 미흡	조치 완료
2023년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예수금 이체 수수료 업무추진비로 지출)	조치 완료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미흡 (포인트 미반납)	조치 완료
	예산 전용 처리 절차 미흡 (내부결재 누락)	조치 완료
	4대 보험 납부액과 원천징수액 차액 발생 (차액분 미반납)	조치 완료
2024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미흡	조치 완료
	재물조사 결과 보고 누락	조치 완료
	휴가 결재 시 사후 결재로 갈음한 사례 다수	조치 완료

- 한편,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아동인권센터는 3개 사업, 6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강사 인력풀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바, 법인의 전문성과 강사들의 전문성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소장 및 국장 2인을 법인에서 본 센터로 파견하고, 강사진 관리, 교육 모니터링 관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행정보조 등을 위해 직원(2명)을 배정하고 있는바,
 - 직원 1명(연구원)이 파견 강사 28명으로 실행하는 인권교육의 품질을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본 센터의 역할이 인권교육의 전문성 활용보다 강사 수급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실제 위탁사업 종사자 조직도 〉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 법 조 사 관	최 현 중
---------	-------	-----------	-------